

해 양 수 산 부

시정 요구·통보

제 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내 용

경상남도²⁰⁶⁾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동산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동산인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별첨과 같이 취득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²⁰⁷⁾에 대한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도록

206)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등 3개 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207) 중요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부동산과 그 종물(从物)
2. 선박, 부표(浮标), 부잔교(浮栈桥)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록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 12.-(9)에 따르면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http://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고, 중요재산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6개월 마다 변동 현황을 수정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89호)」 제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취합하여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하고,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 및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반기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사업소, ○○○○연구소) 및 창원시 등 7개 시·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표]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중요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현황

시군	해당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공시	중요재산공개 시스템공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변동사항 보고여부
○○○○사업소	×	×	○	×

○○○○연구소	×	×	○	×
창원시	×	×	○	×
사천시	×	×	○	×
김해시	×	×	○	×
고성군	×	×	○	×
남해군	×	×	○	×
하동군	×	×	○	×
함양군	×	×	○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통보] 금번 감사에서 제외된 관할 시·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함양군수는

[시정]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 중요재산에 대해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